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책역량 강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과 단서에 의한 정원 중 4급 1명을 복수의 직급(3.4급)으로 조정하고,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 본문에 의한 정원 중 5급 7명을 복수의 직급(4.5급)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1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 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6. 1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5”를 “6”으로 하고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5”를 “4”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해양수산사무관·보건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3”을 “10”으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약무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0”을 “3”으로 한다.

별표 2 중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5”를 “6”으로 하고,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“5”를 “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·	·	·	
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<u>5</u>	<u>6</u>	+1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<u>5</u>	<u>4</u>	-1
·	·	·	
·	·	·	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 무관 · 해양수산사무관 · 보건사무 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시 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	<u>3</u>	<u>10</u>	+7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 관 · 약무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<u>10</u>	<u>3</u>	-7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2]

특허청 공무원 정원표(제19조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· · <u>5</u>	· · <u>6</u>	+1
·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	· · <u>5</u>	· · <u>4</u>	-1
· ·	· ·	· ·	